

리스크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가. 효율적·효과적 리스크 관리 추진을 위해 'iH 주요 회의체 운영계획', '2026년 통합리스크관리회의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규정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건전성 관리의 원칙 현행화(제8조)

- 1) 규정상 재무건전성 관리 원칙 관련 내용이 현행 실무관리 체계와 괴리가 있으며, 효율·효과성을 고려한 관리 재무지표의 선택과 집중 필요
- 2)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 집중 관리 대상 재무지표를 명시하고, 관련 부서별 현행 실무관리 체계에 일치하도록 내용 변경

나.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원칙 구체화(제14조제2항)

- 1) 규정 상에 표기된 유동성 관리 원칙의 내용이 일부 추상적이고 모호한 차원에 머무는 부분이 존재함
- 2) 제14조제2항에 하위 3개호를 추가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변경

다. 사업리스크 관리 관련 자료 제출 주기 현행화(제18조제1항)

- 1) 규정 상에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작성 및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회의 주기와 일치하지 않음
- 2)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라. 법적리스크 관리 관련 내용 현행화(제19조 및 제21조제1항)

- 1) 법적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 및 현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

2) 피소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관리 목적의 용어 수정 등

마. 리스크의 대응에 관련된 책임 주체의 명확화(제27조제2항)

1) 리스크를 전가·회피 또는 감소시키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관한 완화 또는 복구조치 방안 수립의 책임 주체가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로 제한되어 있음

2) 따라서 리스크를 보유하는 경우의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관한 완화 등의 책임 주체를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소관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3. 사전절차

가. 사규안 입안예고 : 2026. 6. 22. ~ 2026. 6. 26.

나. 홈페이지 사전게시 : 2026. 6. 22. ~ 2026. 7. 11.

다.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2026. 7. 28. 원안가결

리스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21일

규정 제738호

리스크 관리규정 일부개정

리스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무건전성 관리의 원칙) 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부서는 공사의 거래 현황·거래 계획 및 영업행위로 인한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추정치 및 결산치를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여 재무목표 달성 여부 및 변동 주요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재무목표가 미달성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유동성리스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주기적인 현금 과부족액 분석과 자금수요 예측을 통하여 관리한다.
 2. 필요자금은 만기상환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조달·운용한다.
 3.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점검·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재무리스크와 손실을 최소화한다.

제18조제1항 중 “월별로”를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로 한다.

제19조 중 “발생하는 공사의 손실 또는 피소사건에 있어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함”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함”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법적리스크 관리의 원칙) ① 법적리스크는 법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③ 필요시 사업부서는 법무부서가 관리하지 않는 소송 및 그 밖의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제27조제2항 중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을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와 소관부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8조(재무건전성비율 관리의 원칙)</u> 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공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비율의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부서는 공사의 거래 현황 · 거래 계획 및 영업행위로 인하여 재무건전성비율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비율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재무건전성비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제14조(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원칙)</u> ① (생 략) ② 유동성리스크는 주기적인 현금 과부족액 분석과 자금수요 예측을 통하여 관리한다.	<u>제8조(재무건전성 관리의 원칙) ①</u>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부서는 공사의 거래 현황 · 거래 계획 및 영업행위로 인한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추정치 및 결산치를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여 재무목표 달성 여부 및 변동 주요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재무목표가 미달성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제14조(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원칙)</u> ① (현행과 같음) ② 유동성리스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주기적인 현금 과부족액 분석과 자금수요 예측을 통하여 관리한다. 2. 필요자금은 만기상환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 조달·운용한다. 3.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점검·대응체계를 정립하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18조(사업리스크 관리의 원칙) ① 해당 사업부서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법적리스크 관리의 목적) 법적리스크 관리는 공사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손실 또는 피소사건에 있어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1조(법적리스크 관리의 원칙) ① 법무부서는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며,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이를 평가한다. ② 법적리스크는 법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고, 재무리스크와 손실을 최소화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리스크 관리의 원칙) ① -----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법적리스크 관리의 목적) - -----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함-----. 제21조(법적리스크 관리의 원칙) ① 법적리스크는 법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이를 주기

현행	개정안
<u>③ 법무부서가 관리하지 않는 소송 및 그 밖의 법적리스크는 사업부서가 법무부서에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 제27조(리스크의 평가 및 대응) ① (생략) ② <u>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리스크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관한 완화 또는 복구조치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u>	<u>적으로 관리한다.</u> <u>③ 필요시 사업부서는 법무부서가 관리하지 않는 소송 및 그 밖의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u> 제27조(리스크의 평가 및 대응) ① (현행과 같음) ② <u>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와 소관부서는</u> ----- ----- ----- -----.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가. 효율적·효과적 리스크 관리 추진을 위해 'iH 주요 회의체 운영계획', '2026년 통합리스크관리회의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내규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건전성 관리방법 관련 현행화(제2조)

- 1) 내규상 재무건전성 관리방법 관련 내용이 현행 실무관리 체계와 괴리가 있으며, 효율·효과성을 고려한 관리 재무지표의 선택과 집중 필요
- 2) 리스크 관리규정 안 제8조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 현행 실무관리 체계에 일치하도록 내용 변경

나. 시장리스크 조사방법 관련 현행화(제3조제2항)

- 1) 내규 상에는 시장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 시장리스크평가 보고서에 따라 월별로 작성 및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회의 주기 및 현행 서식과 일치하지 않음
-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 기한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현행 서식에 맞게 수정

다.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 관련 현행화(제5조제1항)

- 1) 내규 상에는 유동성리스크의 크기를 계량화하기 위한 위험측정방법으로는 현금 과부족액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위험측정 방식과 일치하지 않음
- 2) 따라서 현행 위험측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내용 변경

라.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 관련 현행화(제5조제3항)

- 1) 내규 상에는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작성 및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관련 방침 상의 회의 주기와 일치하지 않음
-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 기한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마. 사업리스크 측정방법 관련 현행화(제7조제3항)

- 1) 내규 상에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리스크평가 보고서에 따라 작성 및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체계 및 서식과 일치하지 않음
-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 및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및 별지 제4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

바. 사업리스크 관리방법 관련 현행화(제8조제1항)

- 1) 내규 상에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작성 및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회의 주기와 일치하지 않음
-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 기한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및 제2호에 부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대책을 제출하는 부진과제 등급에 '관심' 단계가 제외되어 있어 현행에 맞게 추가

사. 사업리스크 관리방법 관련 현행화(제8조제3항)

- 1) 내규 상에는 사업리스크에 관한 리스크 등급 평가를 별표 1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및 별표 1 삭제

아. 사업리스크 관리방법 관련 현행화(제8조제4항)

- 1) 내규 상에는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대책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리스크 등급별로 각 호와 같이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관리방식과 일치하지 않음

- 2) 리스크 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 및 제1호부터 제4호를 삭제

자. 사업리스크 사전협의 관련 현행화(제8조의2)

- 1) 현행 내규 상에는 사업부서가 외부기관과의 계약·협약의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경우에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현행 리스크 관리방식과 일치하지 않음
- 2) 제8조의2(사업리스크 사전협의)를 신설

차. 법적리스크 측정 및 관리방법 현행화(제9조, 제10조)

- 1) 현행 내규 상에는 법적리스크의 평가를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산출 및 별지 제5호 서식 법적리스크 평가보고서에 따라 월별로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관련 방침 상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 2) 사용하지 않는 측정방법 삭제 및 일반소송과 중요소송을 나누고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제출·관리·보고하는 것으로 관리 방법을 현행화

카. 사전협의 및 자문 내용 현행화 및 자구수정(제11조)

- 1) 현행 내규 상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협상안, 공고 또는 공문 등에 대해 법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필수 사전협의 대상의 범위가 넓고 중요한 영향의 기준이 모호하여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변경
- 2) 현행 내규 상에는 법무부서가 법률 검토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타 리스크 관리에는 없는 내용이고 어떤 책임인지에 대한 내용이 모호해 해당 조문 삭제 및 일부 자구 수정

타. 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관련 현행화(제12조)

- 1) 현행 내규 상에는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년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년도 시작 전까지 사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 2)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파. 정기 리스크 보고 관련 현행화(제13조)

- 1) 현행 내규 상에는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리스크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행 회의체 운영 체계와 일치하지 않음
- 2)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리스크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3. 사전절차

가. 사규안 입안예고 : 2026. 6. 22. ~ 2026. 6. 26.

나. 홈페이지 사전게시 : 2026. 6. 22. ~ 2026. 7. 11.

다.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2026. 7. 28. 원안가결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21일

내규 제684호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리스크 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무건전성 비율의 관리방법)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회계부서는 분기 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목표 달성여부 및 변동 주요내용을 사장에게 보고 후 이를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재무목표가 미달성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필요 시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 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전월”을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른 정기 회의 전월까지의”로, “다음달 10일 이내에”를 “지정 기한 이내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3 호 서식”으로, “전월”을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 른 정기 회의 전월까지의”로, “다음달 10일 이내에”를 “지정 기한 이내에”로 한 다.

- ① 유동성리스크의 크기를 계량화하기 위한 위험측정은 현금 과부족액 분석기 법을 이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참고하 여 산출할 수 있다.

1. 통화지표, 시중금리 등 시중 유동성 지표
2.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 공사 유동성 지표
3. 채권 발행물량, 국고채 대비 금리 스프레드 등 조달시장 유동성 지표
4. 그 밖의 유동성 지표로 참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

제7조제3항 중 “별지 제4호 사업리스크평가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를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평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의, 특별관리등급”을 “**관심, 주의, 특별관리등급**”으로 한다.

- ①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른 정기 회의 전월까지의 실적을 지정 기한 이내에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표 1”을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를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의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리스크 사전협의) ① 사업부서는 외부기관과의 계약·협약의 체결, 사업자 공모 공고, 외부기관 공문 발송 등이 회사의 손실 또는 경영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안의 리스크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사업부서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요 쟁점사항 및 근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사업부서는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후속 추진 사항을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법적리스크 관리방법) ① 법무부서는 일반소송과 중요소송을 나누어 소송을 관리한다. 중요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소가 10억 이상의 소송(보상 및 경미한 분쟁 제외)
2. 소가와 상관없이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② 법무부서는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전협의 및 자문)”을 “(사전협의 및 자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의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소관부서는 법적리스크의 검토를 위해 법무부서에 법적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⑦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 소송 관련 서류는 소송업무 규정 제8조에 따른 소송수행부서에서 전산으로 기록하거나 종이문서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다음 년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년도 시작 전까지”를 “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로 한다.

제13조 중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를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재무건전성 비율의 관리방법)</u> <u>재무건전성비율은 회계부서에서 월별로 측정하여 별지 제1호 재무건전성비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그 준수여부 및 변동 주요내용과 전월 실적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2조(재무건전성 비율의 관리방법)</u> <u>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회계부서는 분기 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목표 달성여부 및 변동 주요내용을 사장에게 보고 후 이를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재무목표가 미달성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필요 시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3조(시장리스크 조사방법) ① (생략)</u> <u>② 분양담당부서는 시장리스크를 별지 제2호 시장리스크 평가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전월 실적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3조(시장리스크 조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u> <u>② -----</u> <u>별지 제2호 서식 -----</u> <u>-----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른 정기 회의 전월까지의 ----- 지정기한 이내에 -----</u> <u>-----</u> <u>-----.</u>
<u>제5조(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 ① 유동성리스크의 크기를 계량화하기 위한 위험측정방법으로는 현금 과부족액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u>	<u>제5조(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 ① 유동성리스크의 크기를 계량화하기 위한 위험측정은 현금 과부족액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참</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자금부서는 유동성리스크를 <u>별지 제3호</u> 유동성리스크 평가보고서에 따라 월별로 작성하여,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u>전월 실적을 다음달 10일 이내에</u>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리스크 측정방법) ① ~ ② (생략) ③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사업리스크를 <u>별지 제4호 사업리스크평가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하고</u>,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u>고하여 산출할 수 있다.</u> 1. <u>통화지표, 시중금리 등 시중 유동성 지표</u> 2. <u>유동비율, 당좌비율 등 공사 유동성 지표</u> 3. <u>채권 발행물량, 국고채 대비 금리 스프레드 등 조달시장 유동성 지표</u> 4. <u>그 밖의 유동성 지표로 참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u> ② (현행과 같음) ③ ----- <u>별지 제3호 서식</u> ----- ----- <u>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른 정기 회의 전월까지의</u> ----- ----- <u>지정 기한 이내에</u> ----- ----- ----- ----- 제7조(사업리스크 측정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규정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평가</u>-----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리스크 관리방법) ①사업 부서는 매월 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전월실적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u>주의</u>, <u>특별관리등급인 사업의 경우 그</u> <u>사유 및 향후 대책</u> ② (생략) ③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1항의 자료에 근거하여 <u>별표 1에 따라 리</u> <u>스크 등급을 평가한 후, 필요시 대</u> <u>책을 수립하고 사장에게 평가결과</u> <u>및 대책을 보고한다.</u> ④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대책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에 대 책을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리스크 등급별로 <u>다음 각 호와 같이</u> 관리하 여야 한다. 1. <u>정상 : 별도의 관리를 요하지 않으</u> <u>나, 지속적인 모니터링</u> 2. <u>관심 : 지속적인 관리와 리스크 최</u> <u>소화를 위한 관리실시</u>	제8조(사업리스크 관리방법) ① 사업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 여,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수립된 리 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른 정기 회의 전월까지의 실적을 지정 기한 이내에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u>관심</u>, <u>주의, 특별관리등급</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규정 제22조에</u> <u>따라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u>--- ----- -----. ④ ----- ----- ----- ----- ---<u>규정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리스</u> <u>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u> ----- ---. <삭 제>

현행	개정안
3. 주의 : 매분기말 대책이행자료를 분석·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 4. 특별관리 : 매월말 대책이행자료를 분석·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 손실 최소화 대책 수립 <u><신 설></u>	<u>제8조의2(사업리스크 사전협의) ①</u> 사업부서는 외부기관과의 계약·협약 의 체결, 사업자 공모 공고, 외부기 관 공문 발송 등이 회사의 손실 또 는 경영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주관부 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u>②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 안의 리스크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 두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u> <u>③ 사업부서가 제1항에 따른 사전협 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요 쟁점 사항 및 근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 의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 진하여야 한다.</u> <u>⑤ 사업부서는 사전협의 결과의 반 영 여부 및 후속 추진 사항을 리스 크 관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u>

현행	개정안
<u>제9조(법적리스크 측정방법) ① 법적 리스크의 평가는 공사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성적 방법으로 정상, 주의, 경고로 측정하여 산출한다.</u> <u>제10조(법적리스크 관리방법) ① 법무부서는 매월말 별지 제5호 법적리스크 평가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에 전월 실적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법적리스크 평가보고서에 의거 손실발생 사업건수, 소송건수, 손실예상금액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u> <u>제11조(사전협의 및 자문) ① 사업부서는 공사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협상안, 공고 또는 공문 등을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법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계약의 경우에는 초안 작성 단계부터, 복잡한 사업구조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기획 초기부터 법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u>	<u><삭 제></u> <u>제10조(법적리스크 관리방법) ① 법무부서는 일반소송과 중요소송을 나누어 소송을 관리한다. 중요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u> <u>1. 소가 10억 이상의 소송(보상 및 경미한 분쟁 제외)</u> <u>2. 소가와 상관없이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u> <u>② 법무부서는 법적리스크에 관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u> <u>제11조(사전협의 및 자문 등) ① 소관부서는 법적리스크의 검토를 위해 법무부서에 법적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 ⑤ (생략) ⑥ 법무부서는 법률검토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⑦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 소송 관련 서류는 소송업무규정에 따른 소송수행부서에서 전산으로 기록하거나 별도의 통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소송수행부서는 소송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편철하여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2조(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년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년도 시작 전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 리스크 보고)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는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리스크 현황,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 소송 관련 서류는 소송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소송수행부서에서 전산으로 기록하거나 종이문서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 연간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 제13조(정기 리스크 보고) ----- ----- 규정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리스크 관리의 계획에 따라 ----- ----- ----- --.

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

(20 . . . 현재)

☐ 부동산 시장 동향

- 일반경제 동향
- 토지시장 동향
- 주택시장 동향
- 상업용 부동산 시장
- 부동산금융시장 동향

☐ 지역부동산 시장 동향

- 토지시장 동향
- 주택시장 동향
-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 부동산 시장 전망

- 시장전망 개요
- 토지시장 전망
- 주택시장 전망
-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

☐ 주요 부동산정책 변화

- 토지 관련 정책
- 주택 관련 정책

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

(20 . . . 현재)

☐ 부동산 시장 동향

- 토지시장 동향
- 주택시장 동향

☐ 지역부동산 시장 동향

- 토지시장 동향
- 주택시장 동향

☐ 부동산 시장 전망

- 토지시장 전망
- 주택시장 전망

☐ 주요 부동산정책 변화

- 토지 관련 정책
- 주택 관련 정책

현행

【별지 제3호】

유동성 리스크 평가 보고서

(20 . . . 현재)

☐ 유동성 리스크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 (A)													
지출 (B)													
과부족 (C=A-B)													
과부족(누적)													
현금 과부족률(A/B)													
차입 (D)	소계												
	공사채												
	정부자금												
	보상채권												
	일시 차입												
	차입 상환												
자금흐름 (C + D)													

☐ 평가결과

- 현금과부족 :
-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 및 대책 :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유동성 리스크 평가 보고서

(20 . . . 현재)

☐ 유동성 리스크 현황

1) 연간 현금과부족

(단위 : 억원, %)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 입 (A)													
지 출 (B)													
과부족 (C=A-B)													
과부족(누적)													
현금 과부족률(A/B)													
차입 (D)	소계												
	공사채												
	정부자금												
	보상채권												
	일시 차입 차입 상환												
자금흐름 (C + D)													

2) 참고 지표

- 통화지표, 시중금리 등 시중 유동성 지표
- 유동성비율, 당좌비율 등 공사 유동성 지표
- 채권 발행물량, 국고채 대비 금리스프레드 등 조달시장 유동성 지표
- 그 밖의 유동성 지표로 참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표

☐ 평가결과

- 현금과부족 :
-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 및 대책 :